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5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3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은수(기소), 백지은(공판)

판 결 선 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 ·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부터 2019. 3. 25.까지 춘천시 B에 있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5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등록상표인 'D' 상표를(증거기록 제26쪽 참조)[1] 도용하여 표시한 의류인 래시 가드(rash guard) 311개를(증거기록 제88쪽 참조) 12,134,650원에 판매함으로써(증거기록 제110쪽 참조)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사진 저작물인 광고 사진 4매(일명 'E'인 F, G, H에 대한 것이다)를(증거기록 제84, 85쪽 참조) 복제하여[2](증거기록 제10, 102, 103쪽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서, 가품 사진, 판매 총괄, C 판매 제품 캡처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3], 벌금형 선택), 각[4] 저작권법 제136조

---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므로, 그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복제하여'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이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시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 즉 '동일한'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상표법위반의 포괄일죄 즉 '1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5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건의 개수가 많고 위 판매를 통해 얻은 대금의 액수가 비교적 고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12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 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광고 사진 별로 저작권법위반의 포괄일죄 즉 1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총 4개의 저작권법위반죄를 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5

판사 정문식 _____